

<보도자료>

2013. 11.

2013도5117 업무방해 (통합진보당경선대리투표사건)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3. 11. 28. “통합진보당 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I. 사안의 내용

-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들(피고인 A는 약 30명, 피고인 B는 약 10명)로부터 전자투표를 위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대리투표를 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음
- 피고인들의 주장은 ‘통합진보당의 당규에 존재하는 투표의 종류는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3가지인데, 그 중 직접투표의 경우에는 대리투표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 당내 경선에서 전자투표의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등임

II. 대법원의 판단 : 상고 기각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음
 -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통합진보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¹⁾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음
 -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

1)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함
-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통합진보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 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III. 참고 사항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주심 대법관 민일영)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다만, 위 사건의 피고인은 ‘위 당내 경선에서 전자투표의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위 판결에 직접 판시되지는 않았음. 끝.